내용증명

발 신 인 O O O 주 소

수 신 인 ○ ○ ○ 주 소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 1. 본인은 20○○. ○. ○○. 본인 소유의 ○○시 ○○구 ○○길 ○○ 소재 ◎◎ 고시원 신축공사에 대하여 귀하와 아래와 같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1) 공 사 기 간 : 2000. 0. 00. 착공
 - (2) 총 대 금:금 300,000,000원
 - (3) 완 공 일: 2000. 0. 00
 - (4) 대금지급방법 : 공사착수시에 선급금으로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공사가 끝나는 즉시 전액 지급하기로함.
- 2. 본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〇〇. 〇. 〇〇 선급금으로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귀하는 20〇〇. 〇. 〇〇.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같은 해 〇〇. 〇. 공사비가 없어 공사를 하지 못하니 나머지 공사대금을 달라고 사정하여할 수 없이 본인은 귀하를 신뢰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전액 200,000,000원 지급한 바 있습니다.
- 3. 그런데 귀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며칠 동안은 공사를 착실히 하더니 이후 다른 곳의 일이 바쁘다며 공사를 미루기 시작하여 벌써 완공일로부터 6개월이나 지났고, 현재 공정율은 약 70%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 4. 귀하도 주지하듯이 본인은 그간 수차에 걸쳐 계속 공사이행을 촉구하였으나

귀하는 매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조금만 기다려주면 바로 진행을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해 왔으나, 본인도 더 이상은 귀하를 신뢰할 수 없고 공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마냥 방치할 수 없는 입장이기에 본 통지서로 귀하와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합니다.

5. 아울러 본 계약 고시원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할 목적이었음은 귀하도 잘 알고 있듯이 귀하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공사대금 반환뿐만 아니라 공사지연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등 본인이 입은 모든 피해에 대하여 추가로 청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20 ○ ○ .
 ○ .
 ○ .

 위 발신인 ○ ○ ○

내 용 증 명	· 내용증명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①항 4호 가목에 따라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 제도입니다. 예컨대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며 이 경우 이행의 청구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시효중단의 한 형태로 「최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고」 후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 「최고서」를 작성하여 내용 증명우편으로 송부하고 소송 시 「최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활용	·계약의 해제(해지),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내용 증명을 통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후일 분쟁을 미리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450조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요하며, 통지나 승낙은 확정 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의 양도통지를 할 경우 내용증명에 의하여 통지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 배달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보지 않음 대법원 2001다80815)
제출부수	・3부를 작성하여 봉투와 함께 우체국에 제출
기 타	·내용증명 우편은 3년간 보관하며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 받을 수 있음